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강명구 · 김기웅 · 신동욱
서지영 · 임종득 · 김기현
구자근 · 엄태영 · 권영진
임이자 · 박준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

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4항 제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8호 중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을 “보육료(급식 · 간식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의 필요경비(급식 · 간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 략) 8. <u>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u>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u>보육료(급식 · 간식비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 외의 필요 경비(급식 · 간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u> ----- -----
9. (생 략) ⑤ · ⑥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